

부모의 권리

메릴랜드(Maryland)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영유아 조기 개입 유치원 특수 교육

및

특수교육



개정07/2021



부모의 권리 메릴랜드(Maryland)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영유아, 유치원, 특수 교육 01/2021

© 2013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본 간행물은 미국 교육부, IDEA 파트 C 보조금 #H181A120124 및 IDEA 파트 B 보조금 #H027A012035A의 자금으로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MSDE,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개발 및 제작했습니다. Copyright 2013,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MSDE) 본 문서는 복사하고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MSDE 조기 개입/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가 개발 및 제작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모든 권리 보유.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 데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국적,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서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행정 부교육감 실, 평등 보장 및 준법 감시국(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200 West Baltimore Street, 6th floor, Baltimore, MD 21201-2595, 410-767-0433, 팩스 410-767-0431, www.MarylandPublicSchool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본 문서는 요청 시 다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조기 개입/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에 전화 (410) 767-7770 또는 팩스 (410) 333-1571로 문의하십시오.

Mohammed Choudhury

주 교육감

Clarence C. Crawford

회장

주 교육위원회

Carol A. Williamson, Ed.D.

교무처장

Marcella E. Franczkowski, M.S.

주 부교육감

조기 개입/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

Larry Hogan

주지사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Division of Early Intervention/Special Education Services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410-767-7770(전화)

410-333-1571(팩스)

<http://www.marylandpublicschools.org>

본 문서는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조기 개입 및 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에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암하리어, 아랍어, 벵골어, 버마어, 중국어, 다리어, 프랑스어, 구자라트어, 아이티어, 히브리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네팔어, 파시토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개정 05/2021_최종 발효일

07/01/2021

목차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1
모국어	2
이메일	2
사전 서면 통지	2
통지.....	2
서면 통지 내용.....	3
동의	3
부모 동의.....	3
IEP 파트 B	4
1차 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4
주에서 관리받는 미성년자(Wards of the State)의 1차 평가에 대한 특별 규칙.....	4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5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철회.....	5
IEP 아동 및 청소년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5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	6
기타 동의 요건.....	6
IFSP 파트 C	7
IFSP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7
IFSP를 통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7
IFSP 아동에 한한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7
독립 교육 평가	7
정의.....	7
공공 기관 기준.....	8
공공 비용을 사용한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8
부모 개시 평가.....	8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의 평가 요청.....	9
대리 부모	9
대리 부모의 기준.....	9
정보의 기밀성	9
정의.....	10
보호 조치.....	10
동의.....	11
액세스 권한.....	12
액세스 기록.....	12
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13
정보 파기 절차.....	13
아동의 권리.....	13
징계 정보.....	14
장애 아동 징계	14
정의.....	13
교직원의 권한.....	14
서비스.....	15
징후 결정.....	16

특수 상황.....	16
배치 변경.....	17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17
아직 적격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아동.....	18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의뢰 및 조치:.....	18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	19
상환 제한.....	19
성년이 되는 나이에 부모의 권리 양도.....	20
의견 불일치 해결.....	21
중재:.....	21
중재 장려를 위한 회의:.....	22
주 민원과 적법 절차 민원의 차이.....	22
주 민원 23.....	
주 민원 해결.....	24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인 주 민원 해결:.....	24
적법 절차 민원.....	24
적법 절차 민원의 내용.....	25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대응.....	25
통지의 충분성.....	26
절차 중 아동의 상태:.....	26
해결 절차.....	27
30일 해결 기간 조정.....	27
해결 합의.....	28
적법 절차 심리.....	28
행정법 판사(AJ).....	28
적법 절차 민원 주제.....	29
심리 권리 2.....	29
추가 정보 공개:.....	29
부모의 권리.....	29
심리 결정.....	29
별도의 적법 절차 민원.....	30
심리 일정 및 편의성.....	30
신속 적법 절차 심리.....	30
심리 결정.....	31
심리 결정의 최종성.....	31
항소.....	31
변호사 수입료.....	31
첨부: IDEA 분쟁 해결 절차 비교 차트.....	33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34 C.F.R. § 300.504 및 § 303.421 및 § 303.404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해당되는 경우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는 연방법,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장애 아동 및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보호는 다음에 따라 성립됩니다.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1400 *et seq.*,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4 C.F.R. § 300.1 *et. seq.* (IEP) and 34 C.F.R. § 303.1 *et. seq.* (IFSP) 및 메릴랜드(Maryland) 규정집(COMAR,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5.01, COMAR 13A.08.03, 및 COMAR 13A.13.01. 각 공공 기관은 IDEA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본 통지는 파트 B에 대한 IEP 및 파트 C에 대한 IFSP를 표시하여 IDEA의 파트 B 또는 파트 C에 적용할 수 있는 섹션을 나타냅니다

IFS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가족의 경우, 부모는 절차적 보호 조치 사본과 함께 다음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식별, 평가 또는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 또는 거부한 시기 또는 아동 및 해당 자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
- 아동이 파트 C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에 의뢰된 시기가 포함된 사전 서면 통지,
-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시기의 주 정부의 지불 정책 시스템 사본.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부모는 1년에 한 번 절차적 보호 조치 문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공 기관에서 다음처럼 부모에게 문서의 사본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최초 의뢰 또는 부모의 평가 요청 시
- 학년도에 처음으로 주정부 민원 서면 접수 시
- 학년도에 처음으로 적법 절차 민원 접수 시
-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 부모 요청 시

공공 기관은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의 최신 사본을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 문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해당되는 경우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합니다.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공공 기관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구두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번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통지의 번역본 및 부모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이해했음을 문서화한 서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모국어

IEP 및 IFSP

34 C.F.R. § 300.612, § 300.29, § 303.421, 및 § 303.25

부모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 모국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아동과의 모든 직접 접촉(아동 평가 포함),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문자 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의사 소통 방식이란 해당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 소통)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작성된 아동의 IFSP 또는 IEP를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 인구의 1%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번역된 문서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1% 번역 요건은 본 문서의 중재 섹션에서도 논의됩니다.

이메일

IEP 및 IFSP

34 C.F.R. § 300.505

이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부모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부모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우, 부모는 이메일로 다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 통지
-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및
- 적법 절차 요청 관련 통지.

사전 서면 통지

IEP 및 IFSP

34 C.F.R. §§ 300.503 및 303.421

부모는 아동의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 기관의 조치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

공공 기관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시나 변경을 제안 또는 거부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식별
- 평가

- 교육 프로그램
- 아동의 교육적 배치
-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
- IFSP를 통해 아동 및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 IEP를 통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서면 통지가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와 관련된 경우 공공 기관은 동시에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내용:

IFS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서면 통지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안 또는 거부 중이 조치에 대한 설명
-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절차적 보호 조치 포함.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서면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공 기관이 제안한 조치 또는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
- 공공 기관이 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 부모가 절차적 보호 조치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 포함
- 공공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평가를 위한 1차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통지
- 부모가 IDEA 이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리소스 포함
-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팀이 고려한 다른 선택지와 이러한 선택지가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 공공 기관이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제공.

동의

IEP 및 IFSP

34 C.F.R. § 300.300 및 34 C.F.R. § 303.420

부모 동의:

공공 기관은 조기 개입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모두에 대해 그리고 조기 개입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동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동의를 부모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 동의를 구하는 활동의 수행 및 해당 활동에 대한 설명 및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과 공개 대상자를 나열한 목록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공공 기관에서 동의를 받은 시점과 철회 시점 사이에 발생한 조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받게 한 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동의 철회로 인한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EP - 파트 B

1차 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공공 기관은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1차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¹ 공공 기관은 아동에 대한 1차 평가를 수행하여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 1차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 외에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평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립 학교에 등록했거나 공립 학교에 등록하려는 아동의 부모가 1차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모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은 중재 또는 적법 절차 민원 등 여기에서 자세히 논의된 절차적 보호 조치를 활용하여 아동의 1차 평가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²

부모가 자비로 아동에게 홈스쿨링을 제공하거나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가 1차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모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은 위에 설명된 동의 무시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³

1차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공공 기관이 아동에게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모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에서 관리받는 미성년자(Wards of the State)의 1차 평가에 대한 특별 규칙:

아동이 주에서 관리받는 미성년자(Wards of the State)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동에게 아동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1차 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¹ 34 CFR § 300.300(a).

² 34 CFR § 300.300(a)(3)(i).

³ 34 CFR § 300.300(d)(4)(i-ii).

-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이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부모의 권리가 주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또는
- 판사가 부모의 이외의 개인에게 교육적 결정을 내리고 1차 평가에 동의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공공 기관은 아동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판결을 받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 또는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아동이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부모가 거부하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은

-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하거나 아동을 위한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철회: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한 후, 아동의 부모가 언제든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 동의 철회로 인한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량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부모의 서면 요청 시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동에게 추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추가 제공을 위해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아동에 대한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공공 기관의 동의를 받은 시점과 동의 철회 전에 발생한 조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IEP 아동 및 청소년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공공 기관이 다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공공 기관은 아동을 재평가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재평가를 위한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함 및
- 부모가 응답하지 않음.

부모가 새로운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부모 동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 절차를 통해 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1차 평가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은 새로운 평가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IDE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

공공 기관은 1차 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를 얻고,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평가 및 1차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주에서 관리받는 미성년자(Wards of the State)의 부모를 찾으려고 한 합당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 기관의 부모 동의 획득 시도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화 걸거나 통화를 시도한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부모에게 보낸 서신 및 받은 모든 응답의 사본
-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기타 동의 요건:

공공 기관이 다음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동의 1차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 또는
- 테스트 또는 평가 전에 아동의 모든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를 제공.

공공 기관은 부모의 동의 거부를 이용하여 부모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서비스, 혜택,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비로 아동에게 홈스쿨링을 제공하거나 아동을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 공공 기관은 합의 또는 판결을 받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기관은 34 C.F.R. §§ 300.132-300.144에 따라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모가 아동의 1차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IDEA가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1차 평가, 서비스 초기 제공, 재평가) 외에도, 메릴랜드(Maryland) 법률에 따라 IEP 팀은 다음을 제안하는 경우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메릴랜드(Maryland)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학점을 발급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을 등록
- 주의 대안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대안 교육 평가를 위해 아동을 식별

- COMAR 13A.08.04.0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IEP에 제지 또는 격리 조치를 포함.

부모가 위에 나열된 제안 조치에 대해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은 IEP 팀 회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부모에게 동의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부모는 제안된 조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EP 팀 회의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부모가 서면 동의 또는 서면 거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은 제안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위에 나열된 제안 조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교육 조항 § 8-413(중재 또는 적법 절차)에 나열된 분쟁 해결 옵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FSP - 파트 C

IFSP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부모는 다음 전에 사전 서면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모든 선별, 평가 및 사정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추가 평가 개시
-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지역 주무 기관은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평가 및 사정의 성격 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완전히 인지
 -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아동이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모는 또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격 아동의 부모는 본인, 해당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락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처음에 서비스를 수락했다가 거부하더라도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는 아무 지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연장된 IFSP를 통해 만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육적인 요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추가 평가 또는 사정에 대한 부모 동의:

공공 기관은 아동에 대한 추가 개별 평가 및 사정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무 기관은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이용 가능한 평가 및 사정의 성격을 완전히 인지
- 동의가 없는 경우, 아동이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모가 추가 평가 또는 사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부모 동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 IEP만 해당 34 C.F.R. § 300.502

부모가 공공 기관에서 완료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해당 공공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평가하게 할 권리를 가집니다.

파트 B에 따라 장애 아동의 부모만이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의:

- 독립 교육 평가는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에서 고용하지 않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 공공 지출이란 공공 기관이 평가 비용을 전액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무료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
- 독립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공공 기관의 기준.

공공 기관 기준:

독립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장소 및 심사자의 자격을 포함하여 독립 교육 평가를 위한 기준은 독립 교육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제외하고, 공공 기관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 또는 일정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비용을 사용한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는 공공 기관 평가 수행당 1회에 한해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부모가 공공 기관에서 받은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⁴
- 부모가 공공 기관에서 수행한 교육 평가에 대한 서면 요청을 공공 기관에 제출하고 공공 기관이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경우.
 - 3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 요청을 승인했지만 부모의 과실로 인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다음 기간 이내에 교육 평가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공공 기관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추가 주지사가 선언한 비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기관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요청을 승인하고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부모에게 조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요청을 거부하고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를 시작하고 공공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부모는 여전히 독립 교육 평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를 공공 비용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부모에게 공공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 기관은 독립 교육 평가를 공공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공공 기관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적법 절차 심리를 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⁴34 CFR § 300.502(b)(5).

부모 개시 평가:

부모는 언제든지 비용을 자부담하여 자신이 선택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 및 IEP 팀에서는 부모 개시 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결과가 공공 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⁵ 부모가 개시한 사설 평가 결과는 아동에 대한 적법 절차 심리 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LJ)의 평가 요청:

행정심리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ALJ)가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 비용을 사용해 평가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

IEP 및 IFSP

34 C.F.R. § 300.519 및 § 303.422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역 주무 기관, 지역 학교 시스템 또는 경우에 따라 판사가 적격 아동을 대변할 대리 부모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공공 기관에서 합당한 노력을 들인 후에도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아동이 주에서 관리받는 미성년자(Wards of the State)인 경우.
- 주무 기관은 공공 기관에서 해당 아동이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대리 부모가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리 부모의 기준:

-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리성을 보장하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 개입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주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리 부모로 지정된 대리 부모는 모든 목적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지닙니다.

- 대리 부모는 대리 부모가 되는 데 대해 공공 기관에서 지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직원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무 기관이나 지역 학교 시스템은 주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자에게 대리 부모 임명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아동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⁵34 CFR § 303.502(c).

- 아동의 평가 및 사정
- 연간 평가 및 정기 검토를 포함한 아동의 IFSP 개발 및 시행
- 아동 IEP의 개발, 검토, 수정
- IFSP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IEP를 통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정보의 기밀성

IEP 및 IFSP

34 C.F.R. §§ 300.610-627 및 34 C.F.R. §§ 303.401-417

부모는 아동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기관에 아동의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아래 설명된 일부 상황에서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공공 기관이 아동의 조기 개입 또는 교육 기록을 기밀로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조기 개입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공 기관에 아동의 교육 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

파기란 더 이상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은 34 C.F.R. 파트 99에 있는 '교육 기록'의 정의에 포함된 기록의 유형을 의미합니다(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시행 규정).

조기 개입 기록이란 IDEA 파트 C 및 파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이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얻은 기관 또는 부처를 의미합니다. 파트 C에 따라 참여 기관에는 주무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파트 C 서비스에 대한 자금 조달 출처로만 활동하는 1차 의뢰원 또는 공공 기관(예: 주 Medicaid 또는 CHIP 프로그램) 또는 민간 법인(예: 민간 보험 회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 아동의 주소
- 아동의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 식별자
- 아동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IFSP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개인 식별 가능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의 생년월일, 출생지,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같은 간접적인 식별자

-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관련된 상황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는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동을 식별하게 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 커뮤니티의 특정 아동과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기타 정보
- 교육 기록과 관련이 있는 학생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교육 기관 또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보호 조치:

참여하는 각 기관은 수집, 저장, 공개,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호 조치 요건 외에도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이 교육 기록의 보호에 적용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에 대한 주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공개 조사를 위해 개인 식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관 내 직원의 이름과 직위에 대한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의: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34 C.F.R. 파트 99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는 공개가 승인되지 않은 한, 파트 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 기관의 직원이 아닌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IDEA의 파트 B(IEP)에 따라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주 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적격 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동이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에 소재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등록하려는 경우, 사립 학교가 위치한 지역 교육 기관 (LEA)의 직원과 부모 거주지 LEA의 직원 간에 아동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⁶

MSDE는 주 정부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IDEA 및 FERPA에 따라 기밀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재를 포함한 공공 기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조직 또는 개인은 공공 기관이 IDEA에 따라 기밀 유지 요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 요건을 부모에게 완전히 알리기 위해 적절한 통지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통지가 제공되는 수준에 대한 설명
- 개인 식별 정보가 유지되는 아동 및 필요한 정보의 유형에 대한 설명

⁶ 34 CFR § 300.622.

- 참여 기관이 따라야 하는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 제3자에 대한 공개, 보유 및 파기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의 요약
-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FERPA에 따른 권리 및 34 C.F.R. 파트 99의 시행 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모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

주요 신원 확인, 위치 또는 평가 활동을 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권 전체에 걸쳐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배포와 함께 해당 통지를 신문 또는 기타 매체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게시하거나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는 IDEA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FAPE 또는 IDEA에 따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조기 개입에서 유치원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무 기관은 34 C.F.R. § 303.209(b)(1)(i)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해 MSDE 및 지역 학교 시스템에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34 C.F.R. § 303.209(b)(1) 및 § 303.401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의뢰 및 조치는 FERPA가 전송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권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지역 주무 기관은 부모에게 무료로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주무 기관은 또한 각 IFSP 회의 후 가능한 신속하게 부모에게 각 평가 사본, 아동 평가, 가족 평가 및 IFSP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 공공 기관은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IFSP의 개발 및 실행, FAPE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아동과 관련된 교육 기록을 부모가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IFS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지역 주무 기관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그리고 IFSP 또는 모든 적법 절차 심리에 관한 회의에 앞서 요청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공공 기관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그리고 IEP 또는 모든 적법 절차 심리 또는 해결 세션에 관한 회의에 앞서 요청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45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섹션에 있는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부모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공공 기관의 응답
-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부모가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 기관에 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
- 부모의 대리인이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게 함.

공공 기관은 후견, 별거, 이혼 등의 문제를 관장하는 해당 주 법에 따라 부모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한,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기록:

각 공공 기관은 개인의 이름, 액세스 권한 부여 날짜, 개인이 기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목적을 포함하여 IDEA의 파트 C 또는 파트 B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을 입수하여 공공 기관의 부모 및 공공 기관 직원 이외의 개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에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들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 조사하고 검토하거나 해당 특정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공공 기관은 요청 시 부모에게 공공 기관이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과 위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공공 기관은 부모가 이러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를 위해 작성한 교육 기록 사본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교육 기록에서 정보를 검색 또는 조회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부모가 IDEA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공공 기관에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요청에 따라 정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부모에게 해당 거부 사실을 알리고 교육 기록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리 권리를 조언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열리는 심리는 34 C.F.R. §99.22에 명시된 FERPA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부모에게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결과 공공 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그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부모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심리 결과 공공 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이 보유한 기록, 정보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는 진술에 대해 부모가 지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아동의 기록에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공공 기관에서 기록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한, 공공 기관이 아동 기록의 일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아동의 기록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의 사본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파기 절차:

공공 기관은 IDEA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동에게 조기 개입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영구 기록, 아동의 성적, 출석 기록, 출석한 수업,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에 대한 정보는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C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 정보(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EIS 제공자의 이름 및 종료 데이터(종료 시 연도 및 연령, 종료 시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 포함)는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FERPA 규정에 따라, 주 법에 의해 아동이 장애로 인해 무능력자가 되지 않는 한, 아동의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에게 이전됩니다. 파트 B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성년에 도달한 아동에게 이전된 경우, IDEA 기밀 요건도 아동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부모와 아동에게 IDE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 도달 시 부모 권리의 이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정보:

공공 기관은 아동의 기록에 아동을 상대로 취해진 현재 또는 이전의 징계 조치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징계 정보는 비장애 아동의 기록에 포함되고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설명,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 아동 및 해당 아동과 관련된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아동의 기록 전송에는 아동의 현재 IEP와 해당 아동에 대해 현재 또는 이전에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한 진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 징계

IEP

34 C.F.R. §§ 300.530 - 300.536

아래 정보는 연장된 IFSP 또는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가 있는 만 3-21세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공공 기관이 아동에 대해 특정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모는 특정 절차를 밟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0.530(d)에 따라 공공 기관은 학생의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 해당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 아동을 정학시킨 후 아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본 파트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 규제 약물이란 규제약물법 섹션 202(c)의 부칙 I, II, III, IV 또는 V(21 U.S.C. 812(c))에 따른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 불법 약물이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IDEA 또는 기타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기란 미국 법전 paragraph (2) of the first subsection (g) of section 930 of title 18에 명시된 “위험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미국 법전 paragraph (3) of subsection (h) of section 1365 of title 18에 명시된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의미합니다.

교직원의 권한: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징계 요건에 따라, 배치의 변경이 교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례별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⁷

교직원은 장애 아동의 교칙 위반 시 이는 비장애 아동에 대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까지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 다른 환경으로의 배치 또는 학년당 한 번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의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별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학년당 수업일 기준 연속 10 이내만 추가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그러한 처분이 §300.536에 따른 배치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한).⁸

학생의 교칙 위반 행위가 아동의 장애 징후가 아니며(아래의 징후 결정 참조), 배치의 징계 처분 변화가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직원은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단 학교는 아래 서비스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⁹ 아동의 IEP 팀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임시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¹⁰

장애 아동이 동일 학년에 수업일 기준 10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후, 공공 기관은 제외 후 아래에 설명된 서비스 조항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¹¹

모든 아동에게 요구되는 징계 정책에 따라,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 유치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개입과 지원을 통해 줄이거나 제거할 수 없는 다른 학생 또는 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학교 심리학자 또는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학교 행정부에 의해서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장 또는 학교 행정부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사건당 수업일 기준 5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⁷ 34 CFR § 300.530(a).

⁸ 34 CFR § 300.536 (b)(1).

⁹ 34 CFR § 300.530(c).

¹⁰ *Id.*

¹¹ 34 CFR § 300.530(b)(2).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 유치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연방법(COMAR 13A.08.01.11)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45일 이상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학년 중 수업일 기준 10일 이하로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장애 아동은 공공 기관이 유사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 아동의 현재 배치에서 제외되고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가 아니거나(징후 결정 참조) 특수한 상황에서 제외된 경우(특수 상황 참조), 해당 아동은¹²

1.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이용 가능한 FAPE)를 받아야 합니다
2. 행동 위반을 해결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개입 서비스, 수정된 교육을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동일 학년도 수업일 기준 10일 동안 정학되고, 현재 정학 처분이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하이고, 징계 처분이 배치의 변화가 아닌 경우(아래 정의 참조), 그 후 교직원들은 한 명 이상의 아동 교사와 협의하여,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징계가 배치의 변화인 경우(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의 변경 참조), 아동의 IEP 팀은 아동이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징후 결정

교칙 위반으로 인해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모와 아동의 IFSP 팀 또는 IEP 팀은 IFSP 또는 IEP, 모든 교사 관찰 내용 및 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아동의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문제의 행동이 다음과 같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 공공 기관이 아동의 IFSP 또는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인지.¹³

IEP 팀이 상기 진술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 징후로 판단해야 합니다.¹⁴ 또한 IEP 팀이 문제의 아동의 행동이 LEA가 아동의 IEP를 구현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LEA는 이러한 부족을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¹⁵

¹² 34 CFR § 300.530(d).

¹³ 34 CFR § 300.530(e)(1)(i-ii).

¹⁴ 34 CFR § 300.530(e)(2).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인 경우, IFSP 팀 또는 IEP 팀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¹⁶

-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고, 공공 기관이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행동 개입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이미 있는 경우 아동의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고 그러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¹⁷
- 부모와 공공 기관이 아동의 행동 개입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약물, 무기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로 인해 대안 교육 환경으로 옮겨진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 조치를 내렸던 기존 배치로 아동을 돌려 놓습니다.¹⁸

특수 상황: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동의 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5일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 아동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관할 하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한 경우¹⁹
-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관할 하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 권유하는 경우²⁰
-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관할 하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²¹

IEP 팀은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의 부제에 따라 배치 변경 및 배제에 대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배치 변경:

장애 아동을 현재의 교육적 배치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치 변경이 발생합니다.

- 동일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상 배제된 경우.
- 아동이 동일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총 10일 이상 정학당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정학 대상인 경우. 아동의 행동이 이전 사건에서 일련의 배제를 발생시킨 아동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또한 각 배제 기간, 아동을 배제한 총 시간, 배제 조치 간의 근접성 같은 추가 요인으로 인해.

¹⁵34 CFR § 300.530(e)(3).

¹⁶ 34 CFR § 300.530(f)(1).

¹⁷34 CFR § 300.530(f)(1)(ii).

¹⁸34 CFR § 300.530(f)(2).

¹⁹ 34 CFR § 300.530(g)(1).

²⁰34 CFR § 300.530(g)(2).

²¹34 CFR § 300.530(g)(3).

공공 기관은 배제 패턴이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적법 절차 및 법적 절차를 통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장애 징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배치 변경을 야기하는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정확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이 약물, 무기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으로 옮겨진 경우, 아동은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은 행동 위반을 해결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개입 서비스, 수정된 교육을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IEP 팀은 적절한 서비스 및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를 결정합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장애 아동의 부모가 징계에 대한 결정 또는 징계 사유로 인한 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행정심리사무국(OAH) 및 공공 기관에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²² 공공 기관이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면 아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OAH 및 부모에게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심리가 요청되는 경우, 부모와 LEA가 해결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민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J)가 적법 절차 심리를 실시합니다. 위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심리가 요청될 때마다 심리는 34 CFR § 300.532(c)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리는 반드시 적법 절차 민원이 제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 담당자는 심리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징계 항소에서 AJ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을 배제된 배치로 돌려보냄
- 현재 아동의 배치를 유지하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45일 이내의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명령.
- 이 섹션에 따른 모든 신속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34 CFR § 300.514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²³

참고: LEA가 아동을 원래 배치로 되돌리는 것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²⁴

²²34 CFR § 300.532(a).

²³34 CFR § 300.532(c)(5).

²⁴34 CFR § 300.532(b)(3).

부모나 공공 기관에서 적법 절차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모와 공공 기관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ALJ의 결정이 내려질 때 또는 제공된 기간(수업일 기준 45일 이하)이 만료될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적격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아동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교칙이나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아동은 공공 기관에서 아동이 행동 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공된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공공 기관의 감독자 또는 행정 담당자 또는 자녀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표명
- 부모가 평가를 요청
- 아동의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이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해 특정 우려를 표명하며,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공공 기관의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 통보.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기관은 그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공공 기관의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음
- 부모가 공공 기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음
- 아동이 IDEA에 따라 평가를 받은 후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공 기관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아동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아동이 징계 조치를 받는 기간 동안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동은 학교 당국에서 결정한 교육 배치에 남아있게 됩니다. 공공 기관의 평가 및 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명될 경우, 공공 기관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장애 아동에 관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의뢰 및 조치

IDEA는 공공 기관이 관련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법 당국은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법 및 주 법을 적용할 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모든 기관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

**IEP
34 CFR § 300.148**

IDEA는 공공 기관이 적절한 공교육(FAPE)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부모가 아동을 사립 학교에 배치하기로 선택한 경우, 사립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공공 기관이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IDEA는 공공 기관이 적절한 공교육(FAPE)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부모가 아동을 사립 학교에 배치하기로 선택한 경우, 사립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공공 기관이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연방 규정에 따라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의 모집단에 해당 아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FAPE의 가용성 및 재정적 책임에 관한 부모와 공공 기관 간의 의견 불일치는 IDEA에 따른 적법 절차 민원 처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 불일치 해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동이 공공 기관의 권한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고, 부모가 공공 기관, AU 또는 법원의 동의 또는 의뢰 없이 자녀를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한 상황에서, AU 또는 법원에서 공공 기관이 해당 등록 이전에 적시에 FAPE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기관에서 해당 등록 비용을 부모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U 또는 법원은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해당 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AU 또는 법원은 상환을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립 학교에서 아동을 퇴학시키기 전에 부모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팀 회의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우려와 아동을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에서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IEP 팀에게 알리지 않음.
- 부모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서 자퇴시키기에 앞서 근무일 기준 10일 전까지, 아동을 공립 학교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를 포함하여 아동을 자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음.
- 부모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전에 공공 기관이 사전 서면 통지 요건을 통해 아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부모에게 알렸으나(적절하고 합당한 평가 목적에 대한 진술 포함), 아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모가 허용하지 않음.
- 부모의 행동과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사법적 소견.

위에 설명된 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환 비용은

-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가 통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축소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 공공 기관이 부모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음
 - 부모가 위에 설명된 IDEA 통지 요건에 따라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함
 - 통지 요건 준수 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ALJ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축소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글을 읽지 못하고 영문으로 글을 쓸 수 없음
 - 위에 설명된 통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아동이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성년 도달 시
부모 권리의 이전
IEP
34 CFR § 300.520

메릴랜드(Maryland)에서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장애 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부모의 권리가 아동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Maryland) 법에 의거하여 특정한 제한된 상황에서는 IDEA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가 장애 아동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은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할 때 발생하며, 이는 아동이 주 법에 따라 무능력하다고 판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모를 만날 수 없거나 부모가 알려지지 않고 아동이 부모 대리인을 지정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요청
- 전년도에 부모를 참여시키려는 공공 기관의 반복적인 시도 후에도, 부모가 특수 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부모가 특수 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
-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지속적인 입원, 시설 입소, 심각한 질병 또는 질환으로 인해 특수 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모가 권리를 아동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
-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수 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아동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데 동의
- 아동이 부모의 자택 외부에 살고 있으며 다른 공공 기관의 보호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임.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한 시점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권리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아동이 주 법에 따라 무능력하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권리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대리인이 연방법, 주 법,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연방법, 주 법, 규정에 따라 아동 및 부모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 법에 따라 무능력하다고 판정되지 않고 아동이 권리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IDEA에 따라 부모 대리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아동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의견 불일치 해결

IEP 및 IFSP

34 CFR §§ 300.506-300.516 및 34 CFR §§ 303.430-303-434 및 §§ 303.440-303.449

다음 절차는 아동의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 요건을 비롯하여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공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선택지로는 중재, 주 민원, 적법 절차 민원이 있습니다.

중재:

중재는 장애 아동의 부모 및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 제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여 IDEA의 파트 B에 따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를 위한 자발적인 절차입니다.²⁵ 중재 신청은 부모 또는 공공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²⁶

IEP/IFSP 팀 회의 중에 부모가 아동의 IEP/IFSP 또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EP/IFSP 팀은 부모에게 평이한 말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설명
- 부모가 중재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모는 중재에 대한 정보를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 인구의 1%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IEP/IFSP 팀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번역된 문서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중재 기법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행정심리사무국(OAH) 직원이 중재를 수행합니다. OAH는 MSDE에 소속되지 않은 공정한 단체입니다. OAH에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상충이 없고, 아동의 교육 또는 관리에 관여하는 주 기관 또는 LEA의 직원이 아니며, 공정한 방식으로 중재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자격을 갖춘 직원 목록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중재자는 중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MSDE 또는 LEA의 직원이 아닙니다.

- 중재는 중재를 장려하기 위한 부모와의 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 또는 공공 기관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²⁵34 CFR § 300.506(b)(1)(i).

²⁶ 34 CFR § 303.431(a).

- 중재 요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및 OAH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중재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은 해당 공공 기관 및 MSDE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 기관의 특수 교육 사무소 또는 MSDE, 조기 개입 /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 410-767-7770으로 문의하십시오.
- 중재 과정 중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은 변호사와 동행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재 세션은 서면 요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²⁷
- 중재 세션은 비공개 절차입니다.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기밀이어야 하며, IDEA의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연방 또는 주 법원의 후속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은 중재 시작 전에 기밀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주 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모 및 해당 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부모가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가 가능하지만, 공공 기관은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부모의 심리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중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 장려를 위한 회의:

공공 기관은 중재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 민원과 적법 절차 민원의 차이:

부모는 중재 외에도 주 민원 절차 또는 적법 절차 민원 절차를 이용하여 공공 기관과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에는 서로 다른 규칙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IDEA 규정에는 주 민원과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은 공공 기관이 IDEA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공공 기관만 장애 아동의 식별, 평가,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문제 또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SDE 직원은 일정이 적절하게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주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ALJ는 부모의 요청 또는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의 특정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민원(해결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을 듣고 해결 기간 또는 조정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²⁷34 CFR § 303.431(b)(4).

이러한 선택지에 대한 개요 및 비교는 본 문서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주 민원:

다른 주 정부를 포함한 조직 또는 개인은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MSDE)에 주 정부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정부가 조사를 수행하려면 서면 민원이 IDEA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MSDE는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자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을 포함하여 부모와 기타 관심 있는 개인에게 주 민원 절차를 널리 홍보할 책임을 집니다.

다른 주 정부를 포함한 조직 또는 개인이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요건에 관한 연방법, 주 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반드시 MSDE에 제출해야 하며, 조기 개입/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의 주소는 MSDE,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입니다. MSDE에 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또는 조직은 동시에 민원 사본을 공공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원 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양식은 MSDE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찾거나 부서 민원 조사 및 적법 절차국 전화번호 410-767-777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 민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공 기관이 연방법, 주 법 또는 규정의 요건을 위반했거나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술
- 진술의 기반이 되는 사실
- 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조직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주 민원에서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아동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 주 민원이 제기된 시점에 당사자가 알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

참고: MSDE는 부모와 공공 기관이 주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공 기관, 기타 당사자는 견본 양식을 사용하거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민원은 주 민원이 접수되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MSDE는 주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에 사실에 대한 발견 및 결론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60일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민원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²⁸
- 부모와 관련된 공공 기관이 중재나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²⁹

MSDE는 최소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
- 민원을 제기자에게 주 민원의 주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
- 공공 기관에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34 CFR § 300.506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³⁰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공공 기관이 연방법 및 주 법의 요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
- 민원의 각 주장을 다루며, 사실 및 결론 및 MSDE의 최종 결정 이유를 기재한 서면 결정을 민원 제기자와 공공 기관에 발행.

또한 결정에는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활동, 협상,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MSDE에서 공공 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최종 서면 결정은 공공 기관이 아동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정 조치와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향후 서비스를 포함하여 아동의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의 거부를 시정하는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주 민원 해결: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다른 덜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이 권장됩니다. 당사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MSDE는 연방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인 주 민원 해결:

MSDE가 적법 절차 심리에 포함된 주 민원을 접수한 경우 또는 주 민원에 하나 이상 심리의 일부인 여러 문제가 포함된 경우, MSDE는 적법 절차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는 주 민원의 일부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민원의 문제 중 적법 절차 심리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는 위에 설명된 일정 및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전에 결정된 주 민원에서 동일한 당사자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심리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MSDE는 민원 제기자에게 그 효력을 알려야 합니다.

²⁸34 CFR § 300.152(b)(1)(i).

²⁹ 34 CFR § 300.152(b)(1)(ii).

³⁰34 CFR § 300.152(a)(3).

적법 절차 민원:

부모,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지역 주무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은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배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³¹

적법 절차 민원은 부모 또는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의 근거를 형성하는 주장된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또는 주정부가 본 파트에 따라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주 법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³²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확하게 잘못 진술했거나 공공 기관이 IDEA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해당 일정 내에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³³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려면 부모 또는 공공 기관(또는 부모의 변호사 또는 공공 기관의 변호사)이 적법 절차 민원을 상대 당사자 및 OAH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은 아래에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재 요청 및 적법 절차 민원 양식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아동이 다니는 학교, MSDE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부모나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잠재적인 무료 또는 저렴한 법적 리소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 기관의 조기 개입 사무소, 특수 교육 사무소 또는 MSDE의 조기 개입/특수 교육 서비스 부서 410) 767- 7770으로 문의하십시오.

적법 절차 민원의 내용:

적법 절차 민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거주지 주소(또는 노숙 아동인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의 이름(예: 지역 학교 시스템)
- 문제에 관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거부된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아동의 문제에 대한 설명
- 민원이 제기된 시점에 당사자가 알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은 부모 또는 공공 기관(또는 부모의 변호사 또는 공공 기관의 변호사)이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MSDE는 부모와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본 양식을 제공합니다. 부모, 공공 기관, 기타 당사자는 견본 양식을 사용하거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³¹ 34 CFR § 303.440(a).

³² 34 CFR § 300.511(e).

³³ 34 CFR § 300.511(f).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대응:

당사자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 아동의 조기 개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부모에게 알림
- 절차 보호 조치 문서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
- 부모에 중재 가능 여부를 알림.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에서 부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공공 기관은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답변을 10일 이내에 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 공공 기관이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공공 기관이 고려했던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선택지가 거부된 이유
-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된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 장애 아동의 부모가 본 파트의 절차적 보호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가 평가를 위한 최초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수단
- IDEA의 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출처.

이러한 대응은 적절한 경우 공공 기관에서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의 상대방(부모 또는 공공 기관)은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응답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지의 충분성:

민원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OAH 및 다른 당사자에게 적법 절차 민원이 내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민원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족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OAH는 적법 절차 민원이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하며 아래 명시된 해결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 경우 및 또는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리기 5일 이전에 OAH가 승인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적법 절차 민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결 회의 및 적법 절차 심리는 수정된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절차 중 아동의 상태:

행정 또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징계 섹션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공공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아동은 현재의 조기 개입 또는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초기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아동은 분쟁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³⁴ 절차에 공립 학교 초기 입학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동은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부모 동의 하에 공공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ALJ의 결정이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교육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배치는 후속 항소가 계류되는 동안 아동의 현재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민원이 파트 C(ISFP)에서 파트 B(IEP)로 전환 중이고 만 3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파트 C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 아동이 본 파트에 따른 1차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공공 기관은 아동이 받고 있던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이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부모가 § 300.300(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1차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부모와 공공 기관 간에 분쟁이 없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³⁵

해결 절차: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공공 기관은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춘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팀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팀의 관련 구성원 또는 구성원 및 부모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

- 공공 기관을 대신한 결정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의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모 및 공공 기관이 회의에 참석할 IFSP 또는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부모가 적법 절차 민원 및 민원의 기반이 되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게 함으로써 공공 기관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와 공공 기관이 회의를 포기한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
- 부모와 공공 기관이 중재를 시도하는 데 동의
-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을 개시.

공공 기관이 민원 접수 후 30일(해결 기간) 이내에 적법 절차 민원을 부모가 만족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³⁴ 34 CFR § 303.430(e)(2).

³⁵ 34 CFR § 300.518(c).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45일 일정은 30일 해결 기간 조정 또는 신속 일정 섹션에 설명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30일 해결 기간 종료 시점에 시작됩니다.

30일 해결 기간 조정:

부모와 공공 기관이 해결 절차를 연장하거나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문제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회의가 열릴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이 지연됩니다.

공공 기관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을 문서화한 후에도 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30일간의 해결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적법 절차 민원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노력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화 걸거나 통화를 시도한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부모에게 보낸 서신 및 받은 모든 응답의 사본
-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공공 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열지 않거나 혹은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45일 이내에 심리를 시작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공공 기관이 해결 회의를 포기한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5일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 30일 해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모 및 공공 기관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45일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 공공 기관이 30일 해결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중재 시도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이 중재 절차를 철회하는 경우, 45일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해결 합의:

분쟁 해결 회의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부모와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³⁶

- 공공 기관이 합의를 따르게 할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의 대표자 및 부모가 서명 그리고

³⁶ 34 CFR § 300.510(d).

-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런 종류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행 가능.

부모 및 공공 기관이 회의의 결과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

분쟁에 관여하는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기회를 갖습니다. 부모나 공공 기관은 반드시 부모나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민원의 근거를 형성하는 주장된 행동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2년 요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 절차 불만의 기초를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LEA의 명확하게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부모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공공 기관이 LEA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행정법 판사(ALJ):

- MSDE가 아닌 행정심리사무국의 직원입니다.
- 심리에서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IDEA의 개념 그리고 IDEA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된 연방 및 주 규정과 IDEA의 조항을 잘 알고 있으며 이해합니다
- 적절한 표준 법률 관행에 따라 심리를 실시하고 결정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심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MSDE가 심리관 역할을 하기 위해 MSDE에 의해 지분을 받으므로 MSDE의 직원이 아닙니다.³⁷
- MSDE는 각 개인의 자격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심리관 명단을 보관합니다. 본 정보는 OA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³⁸

적법 절차 민원 주제: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부모 또는 공공 기관)는 다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민원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심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리 권리:

적법 절차 심리(IDEA 징계 절차에 대한 심리 포함)의 모든 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메릴랜드(Maryland) 주해 법규집, 주 정부 조항 §9-1607.1에 따라 적법 절차 심리에서 자신을 대리하거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
- 장애 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변호사를 동반하고 조언을 받을 권리
- 증거를 제시하고, 대립, 반대 심문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 심리 시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의 심리 도입을 금지할 권리

³⁷34 CFR § 303.443(c)(2); 34 CFR § 300.511(c)(1-2).

³⁸34 CFR § 303.443(c)(3); 34 CFR § 300.511(c)(3).

- 부모의 선택에 따라 심리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적 축어 기록을 입수할 권리
-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사실 확인 및 결정을 입수할 권리.

추가 정보 공개:

근무일 기준 적법 절차 심리 시작 최소 5일 전에, 부모와 공공 기관은 해당 날짜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부모나 공공 기관이 심리에서 사용할 예정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권장 사항을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AIJ는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 관련 평가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

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을 출석시킬 권리
- 심리를 공개할 권리
- 심리 기록과 사실 확인, 결정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심리 결정:

아동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에 대한 AIJ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AIJ는 다음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만 절차상의 결함으로 인해 아동이 FAPE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FAPE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부모의 기회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 교육 혜택 박탈을 유발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어떠한 조항도 AIJ가 IDEA 파트 B(34 CFR 300.500 - 300.536)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조치 섹션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도록 공공 기관에 명령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동을 적절히 식별, 평가 또는 배치했는지 여부 또는 아동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AIJ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AIJ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아동이 적절하게 식별, 평가, 배치되지 않거나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해당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 아동 및 해당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의 기회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
- 교육 또는 개발 혜택 박탈을 유발한 경우

별도의 적법 절차 민원:

IDEA의 절차적 보호 조치 섹션에 있는 어떤 내용도 부모가 이미 제기된 적법 절차 민원과 별개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심리 일정 및 편의성:

해결 회의를 위한 30일간의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또는 30일 해결 기간 조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조정된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다음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림
- 결정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

AU는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45일 기간을 초과하는 특정 기간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심리는 부모와 아동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속 적법 절차 심리(IEP만 해당):

공공 기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장애 아동을 대신하여 적법 절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장애 아동
-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장애 아동 배치
- 징후 결정.

적법 절차 심리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U는 심리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리 결정:

공공 기관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삭제한 후에 해당 조사 결과와 결정을 주 자문단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해당 조사 결과와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³⁹

심리 결정의 최종성:

AU 결정은 부모나 공공 기관이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조사 결과 및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적법 절차 심리에 제시된 민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

조사 결과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심리 당사자는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AU 결정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국 주 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³⁹ 34 CFR § 300.513(d).

- 행정 절차의 기록을 접수합니다.
- 부모의 요청 또는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 증거의 우위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책을 허용합니다.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미헌법, 1990년 미국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표제 V(섹션 504)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연방법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권리, 절차, 구제책을 제약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IDEA 파트 B에 의거하여 구제를 구하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에 설명된 적법 절차가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소진되어야 합니다. 즉, 이는 부모가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중복되는 다른 법에 의거한 구제책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 따라 구제책을 추구하려면 법정으로 직행하기 전에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행정 구제책(즉,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수입료

IEP 및 IFSP

34 C.F.R. § 300.517

IDEA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재판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수입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 승소한 장애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부모의 변호사가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는 민원 또는 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부모의 변호사가 소송에서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명백히 판정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모의 변호사에게 승소한 MSDE 또는 기타 공공 기관 측
- 부모의 민원 또는 후속 소송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유발, 불필요한 소송 비용 증가 등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기된 경우 부모의 변호사 또는 부모에게 승소한 MSDE 또는 기타 공공 기관 측

수입료는 제공 서비스의 유형 및 품질에 대해 소송이 발생한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재정되어야 합니다. 수입료 재정 시 보너스 또는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EA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FAPE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원인과 관련된 법적 수수료, 법정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입료가 재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사법 조치의 결과로 소집되지 않은 IFSP 또는 IEP 팀 회의
- 적법 절차 민원 접수 전에 수행된 중재
- 해결 회의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에게 서면 합의 제안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연방민사소송규칙 68(Rule 68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명시된기한 내에 또는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10일 이상 이전에 합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 10일 이내에 제안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 심리에서 부모가 획득한 구제책이 합의 제안보다 유리하지않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부모가 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임료와 비용이 재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임료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부모의 변호사가 분쟁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
- 수임료가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능력, 평판, 경력을 가진 해당 지역 변호사가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소송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자한 시간과 제공한 법률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리 요청 통지 제출 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임료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 공공 기관이 해결을 지연
- 절차적 보호 조치 요건의 위반.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IDEA에 명시된 특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모는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첨부:

IDEA 분쟁 해결 절차 비교 차트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해결 절차	주 민원
누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이지만 양측 모두 자발적이어야 함	부모 또는 공공 기관	당사자가 중재를 포기하거나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민원이 접수되면 공공 기관에서 해결 회의 일정을 잡음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을 포함하여 포함한 모든 개인 또는 조직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정되지 않음	예상이 제한된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¹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에 의해 유발	위반 혐의 날짜로부터 1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적법 절차 민원 제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여 파트 300에 따른 모든 문제(예외 있음) ²	적절한 무상 공공교육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예외 있음)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와 동일	IDEA의 파트 B 또는 파트 300의 위반 혐의
문제 해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되지 않음	일정에 대한 특정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3,4}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모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한 후 15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해결 회의를 소집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거나, 부모 또는 공공 기관이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해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30일 이내 ^{3,5,6,7}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 ⁸
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부모 및 공공 기관이 중재자와 함께 절차는 자발적이며 양 당사자 모두 모든 해결에 동의해야 함	심리관/행정법 판사(AJ)	부모 및 공공 기관 양 당사자가 모든 해결에 동의해야 함	메릴랜드(Maryland) 주 교육부 ⁹

¹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부모에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적법 절차 불만의 기초를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공기관의 명확하게 잘못된 진술 또는 (2) 공공기관이 IDEA 파트 300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34 C.F.R. § 300.511(f)).

²이러한 예외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수 교육 서비스의 1차 제공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절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4 C.F.R. § 300.300(B)(3)). 공공기관은 부모가 사립 학교에 배치하거나 홈스쿨링을 제공하는 아동의 1차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절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4 C.F.R. § 300.300(c)(4)(i)).

아동을 사립 학교에 배치한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제기 권리는 공공기관이 아동 찾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34 C.F.R. § 300.140). 공공기관이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문제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주 교육부(SEA)에 주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C.F.R. § 300.156(e)).

³징계 절차에 따라 신속 심리를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이 현재 등록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해결 기간은 15일입니다(7일이내 회의 개최). 양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리는 심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 후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34 C.F.R. § 300.532(c) 및 COMAR 13A.05.01.15).

⁴심리관/ALJ는 양측의 요청에 따라 특정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 300.516(c)).

⁵규정에 따라 30일 해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를 위한 45일 일정은 다음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다음 날에 시작됩니다. (1) 양 당사자가 해결 회의 포기를 서면으로 동의. (2) 중재 또는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 3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서면으로 동의. (3) 양 당사자가 30일 해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재를 계속하기로 서면으로 합의 했지만 나중에 부모 또는 공공기관이 중재 절차를 철회하는 경우. (34 C.F.R. § 300.510 (c)).

⁶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회의가 열릴 때까지 문제 해결 절차 및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은 지연됩니다. (34 C.F.R. § 300.510(b)(3)).

⁷공공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는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ALJ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4 C.F.R. § 300.510(b)(5)).

⁸특정 민원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거나, 부모(또는 중재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수단이 주 절차에 따라 개인 또는 조직에게 제공되는 경우 개인 또는 조직) 및 공공기관이 중재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주 내에서 가능한 경우 대안적인 분쟁 해결 수단에 참여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주민원 해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34 C.F.R. § 300.152(b)(1)).

⁹ MSDE 민원 절차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제안을 포함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4 C.F.R. § 300.152(a)(3)). 경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공공기관은 MSDE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Maryland) 주교육부
Division of Early Intervention & Special Education Services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410-767-0249(전화)
410-333-1571(팩스)
<http://www.marylandpublicschools.org>